

◎ 國務總理 · 國務委員 出席要求

○ 現行: 198

第 98 條 ① 國務總理 · 國務委員

또는 政府委員은 國會나 그 委員會에 出席하여 國政處理 狀況을 보고하거나 의견을 陳述하고 質問에 응답할 수 있다.

② 國會나 그 委員會의 要求가 있을 때에는 國務總理 ·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은 出席 · 答辨하여야 하며, 國務總理 또는 國務委員이 出席要求를 받은 때에는 國務委員 또는 政府委員으로 하여금 出席 · 答辨하게 할 수 있다.

(一般敍決定多數보다 양화)

— 大統領制에서는 效率的 行政遂行을 위하여 원래 出席義務가 없는 것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少數派에 까지 出席要求權을 인정할 경우 濫用素地가 있음.

○ 民主黨: 163
現行과 같은

○ 民主黨: 163

第 63 條 國務總理 國務委員 또

는 政府委員은 國會와 그 委員會에 出席하여 國政處理 狀況을 報告하거나 意見을 陳述하고 質問에 應答할 수 있으며, 國會와 그 委員會 또는 在籍 3 分の 1 以上の 要求가 있을 때에는 出席 答辨하여야 한다.

(代理出席許容)

— 빈번한 國務總理 · 國務委員 出席要求로 국정遂行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대비하여 代理 答辨制度도 存置하고 실제 活用하도록 함.